

## 혁신제품이란
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

-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,
- ② 상용화 전 시제품,
- ③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

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(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)이 되고,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 (「조달사업법」 개정안)

혁신제품으로 지정 후,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(연장 논의 중)



## 혁신제품이란

지정 방법 : FastTrack

### Fast Track I



#### 우수연구개발제품

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(제품화에 성공) 중  
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 
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
### Fast Track II



#### 혁신 시제품

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 
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 
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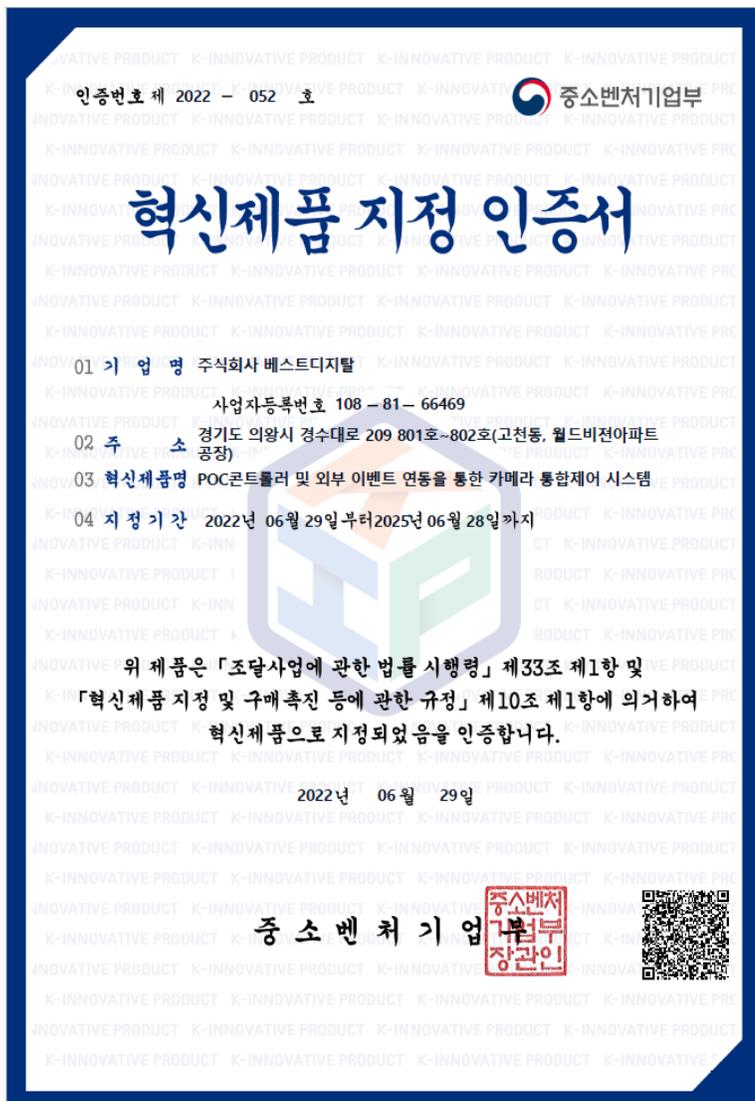
### Fast Track III



#### 혁신성 · 공공성 인정제품

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·조달청장에게 추천한  
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 
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
## 혁신제품 소개



- ◆ 혁신제품 인증번호 제 2022 - 052 호
- ◆ 혁신제품명 : POC 콘트롤러 및 외부 이벤트 연동을 통한 카메라 통합제어 시스템
- ◆ 개요 : 본 제품은 고해상도 영상, 전력 및 신호 통합전송 영상감시장치
- ◆ 특징
  - 1) ONVIF 를 통한 카메라 제어기능
  - 2) AI 이벤트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 정의 및 모듈 개발 & 연동 가능
  - 3) 최대 300M QHD 영상신호 전송
  - 4) COC 카메라 제어 신호 및 영상 신호의 변환
- ◆ 주요 품목
  - 1) 200만 화소 ~ 4K 해상도 지원하는 다양한 카메라 제품 규격 등록
  - 2) 전 제품 TTA 인증 완료
  - 3) AI 기반 특화 제품

## 구매혜택

- 각 기관은 '혁신장터'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
-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
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-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
- 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  
기관별 총 물품 구매액의 1.6% (지자체 0.8%)
-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  
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


**맞 / 춤 / 가 / 격**

구매가격, 예산에 맞게 조정가능!



**부 / 담 / 제 / 로**

구매면책,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!



**세 / 상 / 편 / 함**

고성능 AI 카메라, 수의 계약 가능!



**보 / 안 / 철 / 저**

전제품 TTA 보안인증 Line - up!

## 혁신제품 VS 조달우수제품

항목	조달우수제품	혁신제품
구매가격 유연성	낮음 (단가계약 가격 고정)	높음 (수의시담으로 조정가능)
신규품목 등록	느림 (규격추가-계약-시담-등록)	빠름 (규격추가-등록)
구매면책	있음	있음
인지도	높음	낮음